

#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(예비당첨자) 자격 확인 서류 안내

두산위브&수자인

부평 더퍼스트

## ■ 자격확인 서류 안내

| 구비서류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발급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필수<br>서류          | 신분증      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 동포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/외국인: 외국인 등록증)※ 모바일 신분증 불가<br>※ 2020.12.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.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인감증명서 또는<br>본인서명사실확인서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발급 구분: 본인발급 / 용도: 서류제출 및 계약용<br>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<br>※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<b>[발급용도(직접작성): 서류제출 및 계약 / 제출처: 두산건설(주)]</b>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인감도장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표등본<br>(전체포함)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·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표초본<br>(전체포함)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추가<br>서류          | 출입국에관한<br>사실증명(상세)    | •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"상세"로 발급 (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.1.1.부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표등본<br>(전체포함)     | 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(분리세대)<br>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·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가족관계증명서<br>(상세)       |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<br>•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(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 한함)<br>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청약통장 가입확인용<br>순위확인서   | •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(1~3점)한 경우<br>- 청약률: 청약률 > 청약자격확인 > 청약통장 > 순위확인서 발급 >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>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<br>- 청약통장 가입은행: 청구 방문 >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당첨사실 확인서              | •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(1~3점)한 경우<br>- 청약률: 청약률 > 청약소통방 > APT당첨사실 조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표초본<br>(전체포함)     | •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며, 피부양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<br>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3년 이상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   | •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<br>※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출입국에관한<br>사실증명(상세)    | •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.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<br>-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<br>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"상세"로 발급 (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.1.1.부터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국민건강보험<br>요양급여 내역     | •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<br>- 당첨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<br>(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22.09.19.~현재까지 / 전체출력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표초본<br>(전체포함)     | •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<br>※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적격<br>통보를<br>받은자 | 해당 주택에<br>대한 소명서류     |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(가족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물확인서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), 공동주택가격확인서, 철거예정증명서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증빙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|
|                   | 당첨사실 소명서류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해외근무 증명서류     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파견 및 출장명령서 / 현재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·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출입국에관한<br>사실증명(상세)    | 배우자 및<br>세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"상세"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인감증명서,<br>인감도장        |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용도: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(본인발급용) / 대리인 발급용 불가<br>•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신분증                   | 대리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 동포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/외국인: 외국인 등록증)※ 모바일 신분증 불가<br>※ 2020.12.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.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건본주택 비치 서식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5.09.19.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.

※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은 취소됩니다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,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